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54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모경종・이광희・김우영

김한규 • 이병진 • 이용우

남인순 · 김준혁 · 이재강

주철현 • 황명선 • 진선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법인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이하 "법인업무용 자동차"라고 함)의 사적사용과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일반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지」를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있음.

그런데 일부 법인업무용 자동차 사용자 사이에서 해당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판매가를 낮춰계약한 뒤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동차의 용도별로 번호판 색상을 직접 규정함으로 써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등록번호판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황색바탕에 검은색문자
- 2. 비사업용 자동차
 - 가. 일반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은색문자,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문자
 - 나. 외교용 자동차(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감청색바 탕에 흰색문자
 - 다. 1)부터 3)까지의 법인 등 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국가인권

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

- 2) 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승용자동차.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경우로 한정한다.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 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하거나 대여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	
작・발급 방법 등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등록번</u>
	호판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u><신 설></u>	1.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u>황색바탕에 검은색문자</u>
<u><신 설></u>	2. 비사업용 자동차
	가. 일반용 자동차(대여사업
	용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u>포함한다): 페인트방식 번</u>
	호판은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은색문자, 필름
	부착방식 번호판은 흰색바
	<u>탕에 검은색문자</u>
	나. 외교용 자동차(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나 이에 준
	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
	차를 말한다): 감청색바탕
	에 흰색문자

- 다. 1)부터 3)까지의 법인 등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문자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 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국가인 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
 - 2) 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 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승용자 동차. 다만, 「여신전문 금융업법」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 용 승용자동차(「여신전 문금융업법」 제3조제2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8조에 따라 등 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 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 용자동차